〈간이투자설명서〉

위험

위험

작성기준일: 2025년 05월 14일

마이다스 아시아 리더스 성장주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 [펀드코드: B1678]

투자위험등급 2등급 [높은 위험] 1 5 6 매우 매우 다소 높은 보통 낮은 높은 높은 낮은

위험

위험

위험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은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 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주 식형 모투자신탁(마이다스 아시아 리더스 성장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자산의 100% 이하를 투자하여 가격변동위험, 파생상품 관련 위험 등이 있 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마이다스 아시아 리더스 성장주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 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1

위험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모투자신탁은 아시아 지역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식을 발굴,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투자신탁은 아시아 지역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식들을 발굴하여 투자할 계획입니다. 투자대상 국가는 아시 아 국가 중 중국, 일본,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등이며, 해당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발행, 유통되는 아시아 기업의 주식(주식예탁증서(DR) 포함)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모자형

1 72 77 02 11 10 77 10 010 2 11 10 77 10 10 77 10										
	투	자자가 부	담하는 수수를 (단위: %)	료 및 총보수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 천원)					
클래스종류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합성 총 보수· 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 오프라인형(A)	납입금액의 1.0% 이내	1.770	0.800	1.560	1.845	286	483	689	1,133	2,454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형(C1)	없음	2.270	1.300	1.670	2.337	240	472	690	1,119	2,407
수수료선취- 온라인형(Ae)	납입금액의 0.5% 이내	1.370	0.400	1.190	1.444	197	352	514	864	1,903
수수료미징구- 온라인형(Ce)	없음	1.470	0.500	1.340	1.544	158	324	499	875	1,991

투자비용

-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 <mark>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피투자펀드 보수·비용 포함))을 의미</mark>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 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 (주2) 종류 A형과 종류 C1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 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4년 2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및 보수 등 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3) 종류 C1을 가입한 투자자는 1년 이상 경과 시 종류 C2→C3→C4로 자동으로 전환되므로 상기 예시에서는 전환을 가정 하여 적용한 것입니다.
- (주4)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 (주5)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하며, 2025 년 4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실적추이 (연평균 수익률)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종류	최초설정일	2024/05/15~	2023/05/15~	2022/05/15~	2020/05/15~	설정일 이후
		2025/05/14	2025/05/14	2025/05/14	2025/05/14	
수수료선취-	2015-05-	10.54	18.56	10.30	11.67	7.50
오프라인형(A)(%)	28	10.54	10.50	10.50	11.07	7.50
リコフ!人/0/)	2015-05-	9 75	10.63	7.21	5.80	2.61
비교지수(%)	28	9.70	10.03	7.21	٥.٥٥	2.01
수익률	2015-05-	18.75	16.01	15.24	16.19	15.90
변동성(%)	28	د ۱۵٫۲	10.01	13.24	10.19	15.90

- (주1) 비교지수: MSCI AC Asia USD Index X 100%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 후 해당기 간 동안의 세전 평균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명 생	4014	생년 직위	운용	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해외주식형)(%)				운용경력	
		생년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운동			용사	년수	
			책임		(억원)	최근1년		최근1년	최근2년	16년	
	오남훈	1978	(수석 본부장)	14개	2,736	16.48	21.96	16.48	21.96	8개월	
운용전문인력	유주형	1986	부책임 (부장)	16개	2,730	16.44	21.94			9년 8개월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예금자보호법		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성	남품으로 투기	자원금의 손	실이 발생할	할 수 있으므	
	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mark>유의하시기</mark> 브 다 자세한 내		시어 트자선	명서이 교트	브르 오처하기	니며 귀하이	<u> 기하트자</u>	트리 매인 이	
	전까지 교투	부하오니 :	참고하시기 ㅂ	바랍니다.							
투자자	경우 효력발	발생일 이		실 수 있습니	다.						
유의사항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경제의 하시기 바라니다.										
	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										
	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경과										
	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										
	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분	01 = 31.1510	O O H (O)=1 4		투 <mark>자위험의</mark>		alel mali	. o. E	FLOUR E ZI EI	
	원본손실 이 투자신탁은 원본(이하 "투자원금액"이라 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가는 투자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투자원금액의 손실 유										
	위험 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주식시장은 시장 내의 수급과 시장 외부변수에 따라 그 등락을 거듭합니다. 그 중에서도 경제성장률,										
	주요 운용위험 환율, 금리변동 등의 요인들은 개별기업 성과의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주식시장 전체에 영향 개별주식가격의 등락을 초래하게 되므로,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는 예상하기 어려운										
				도 합니다. 이러한 외부변수들의 변화는 투자자산 가치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은 주로 외환표			, .		0		
					니다. 이는 해당 외화투자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치 변화로 인해 투자 시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워금 손실이 발						
주요투자위험			원화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상대적 가치 변화로 인해 투자 시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원금 손실이 발 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달러화 및 홍콩달러화 대비 원화 환산가치의 하락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모투자신탁의 외화								
			표지자산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원-미국달러 및 원-홍콩달러 관련 장외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도포								
	환율변동	위헌	지션구축 등의 전략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 투자수단의 유용성에 따라 필요 시 미국달러, 홍콩달러 외 통화로 환혜지 할 수 있습니다.								
	Ceco	, 110	물요 저 미국물니, 중중물니 되 중의로 된에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혜지 거래상대방의 거래불능 상황 또는 해당 통화의 거래가 일시적 혹은 상당기간 시장에서								
					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헤지 거래						
	가 전액 실행되지 못하거나 환율변동 위험이 감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환혜지를 하는 경우에도 보유자산의 가치변동으로 인해 혜지비율이 달라질 수								마진 스 이어	권 <u>진하트</u> 기	
				들 이는 성수? 산가치의 규모,	–						
				어렵다고 판단				. 있습니다. <u>.</u>	또한, 환헤지-	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리	내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	용이 발생합니	l다.				

		이 투자신탁	은 아시아 지역 내 국가의 주식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 대상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아시아 지역 내 국가의 주식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 대상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신흥시장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의 투자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국가, 글로벌시장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대상 국가의 위험에 크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해지의 위험	수익자 전원 하는 경우, ¹ 이후 2년) 경 81조제3항저 신탁의 설정 ⁴ 수 있습니다.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이후 2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투자신탁을 해지할				
매입 방법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혼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환매청구일로부터 제8영업일(D+7)에 관련 세금 등: 공계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상법환매방법방법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매수수료		없음	준가격을 적용. 제9영업일(D+8)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 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midasasset.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구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입니다.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집합투자기구 수익자	거주자와 일 포함) 세율로	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와 일 포함) 세율로	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와 일 포함) 세율로 기준금액을 <u>:</u>	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을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주요 내용 2017년 12월 31일까지				
과세		거주자와 일반 포함) 세율로 기준금액을 <i>할</i> 구분 가입기한 가입한도	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을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주요 내용 2017년 12월 31일까지 1인당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해외상장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				
과세	수익자 해외주식투자전	거주자와 일 포함) 세율로 기준금액을 <i>호</i> 구분 가입기한	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을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주요 내용 2017년 12월 31일까지 1인당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과세	수익자 해외주식투자전 용집합투자증권 저축	거주자와 일(포함) 세율로 기준금액을 <i>:</i> 구분 가입기한 가입한도 대상펀드	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을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주요 내용 2017년 12월 31일까지 1인당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해외상장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 포함)은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 ※ 채권이자, 주식배당, 환혜지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파생상품거래에서 발				
과세	수익자 해외주식투자전 용집합투자증권 저축 가입자	거주자와 일반 포함) 세율로 기준금액을 표 가입기한 가입한도 대상펀드 세제혜택 색용기간 에 대한 세부/	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을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주요 내용 2017년 12월 31일까지 1인당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해외상장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 포함)은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 ※ 채권이자, 주식배당, 환혜지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 등은 과세대상 이익임				
과세 건환절차 및 방법	사익자 해외주식투자전 용집합투자증권 저축 가입자 ※ 세제혜택 및 과서 사항'을 참조하시기 집합투자업자는 수 취득일을 기산일로 적용일까지를 말합 최초로 매입하는 수 1. C1클래스 수의 2. C2클래스 수의	거주자와 일반 포함) 세율로 기준금액을 할 기준금액을 할 기준금액을 할 기준 기한 가입한도 대상펀드 세제혜택 적용기간 에 대한 세부/기 바랍니다. 학의자의 전환하여 다른 나다)에 따라 학의증권은 종류 기증권의 보유: 기증권의 보유: 기능권의 보유: 기능권의 보유:	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을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주요 내용 2017년 12월 31일까지 1인당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해외상장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 포함)은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 ※ 채권이자, 주식배당, 환혜지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 등은 과세대상 이익임 가입일부터 10년까지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 수익자의 (일부)환매청구에 따라 해당 수익증권의 (일부)환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전환하지 아니하고, 당해 (일부)환매청구에 대한 환매대금지급일의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집합투자업자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대표번호: 02-3787-3500 / 인터넷 홈페이지: www.midasasset.com)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10조 좌				
효력발생일	2025년 07월	10일		존속 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u>www.midasasset.com</u>),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 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수수료선취 (A)	수수료미경 징구형(C) 2년 117 비용을 지하는 시점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11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은 약 4년 2개월					
	판매수수료	수수료미징구 (C)	지하는 지금은 국 4년 2개월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11개월이 경과되니다. 따라서 2년 11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 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은 약 4년 2개월						
		수수료후취	일정 기간 이전에 환매할 경우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경로	온라인 (e)	는 집합투	투자기구보다 판 나만, 판매회사로	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 한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 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				
집합투자기구 의 종류		오프라인	매되는 집	입합투자기구보 [©]	·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 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 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				
		온라인슈퍼 (S)	및 S-P클리 열하는 온 자기구[기 구 제외]	배스 포함)를 취급 라인판매시스템을 <mark>ㅏ입 자격(기관</mark> 보다 판매보수	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 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집합투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집합투자기 는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 나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보수체감 (CDSC)	판매수수료 따라 판매 유기간이 됩니다.	로미징구형(C) 집 보수를 적용하기 경과함에 따라 :	입합투자기구이며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없이 집합투자증권의 보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				
		기관(F) 개인연금 (C-P1) 퇴직연금	소득세법 통해 매입	제20조의3 및 이 가능한 집합투	F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F자기구입니다.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용				
		(C-P2) 랩(W)	도로 판매 판매회사의	되는 집합투자기 이 일임형 종합자					
		급(VV)	전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						
		무권유저비용 (G)			압누사기구들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경구 판매주 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				

-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midasasse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midasasset.com)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midasasset.com)